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2007.11.26. 옥성자연휴양림 개장이후 적극적인 휴양림 홍보와 이용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1년 만에 정상운영의 궤도에 진입 하였으나
- 공직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직제 및 인원 증가 불가』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출장지도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위탁운영을 통해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

- 위치 : 옥성면 주아리 산144번지의외 4필
- 면적 : 153ha
- 시설물 : 관리사무실, 숲속의 집 10동을 포함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물

3. 운영전출금 : 350백만원

- 운영전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보험료	당직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제초
350	181	51	15	4	19	80

※ 2007. 11. 26. ~ 2008. 11월(1년간) 지출금액 기준임.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타당성 용역결과('07년 6월)

- 직 영 385백만원 (인건비 211, 경비 174),
- 공단위탁 367백만원 (인건비 201, 경비 166)
- 민간위탁 354백만원 (인건비 168, 경비 139, 관리비 15, 이윤 32)
- 휴양림 운영관리 적정인원 : 8명 (직원 4명, 비정규직 4명)
 - 현근무인원 : 비정규직 9명

※ 운영수입금 현황 (2007. 11. 26 ~ 2008. 11. 현재)

• 총수입금 : 190,782천원 (월 16,447천원)

[숲속의집 1,875동 155,902 차량 12,310대 24,704 야영데크 1,696개 1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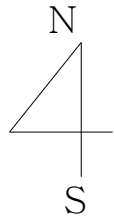
4. 위탁관리 근거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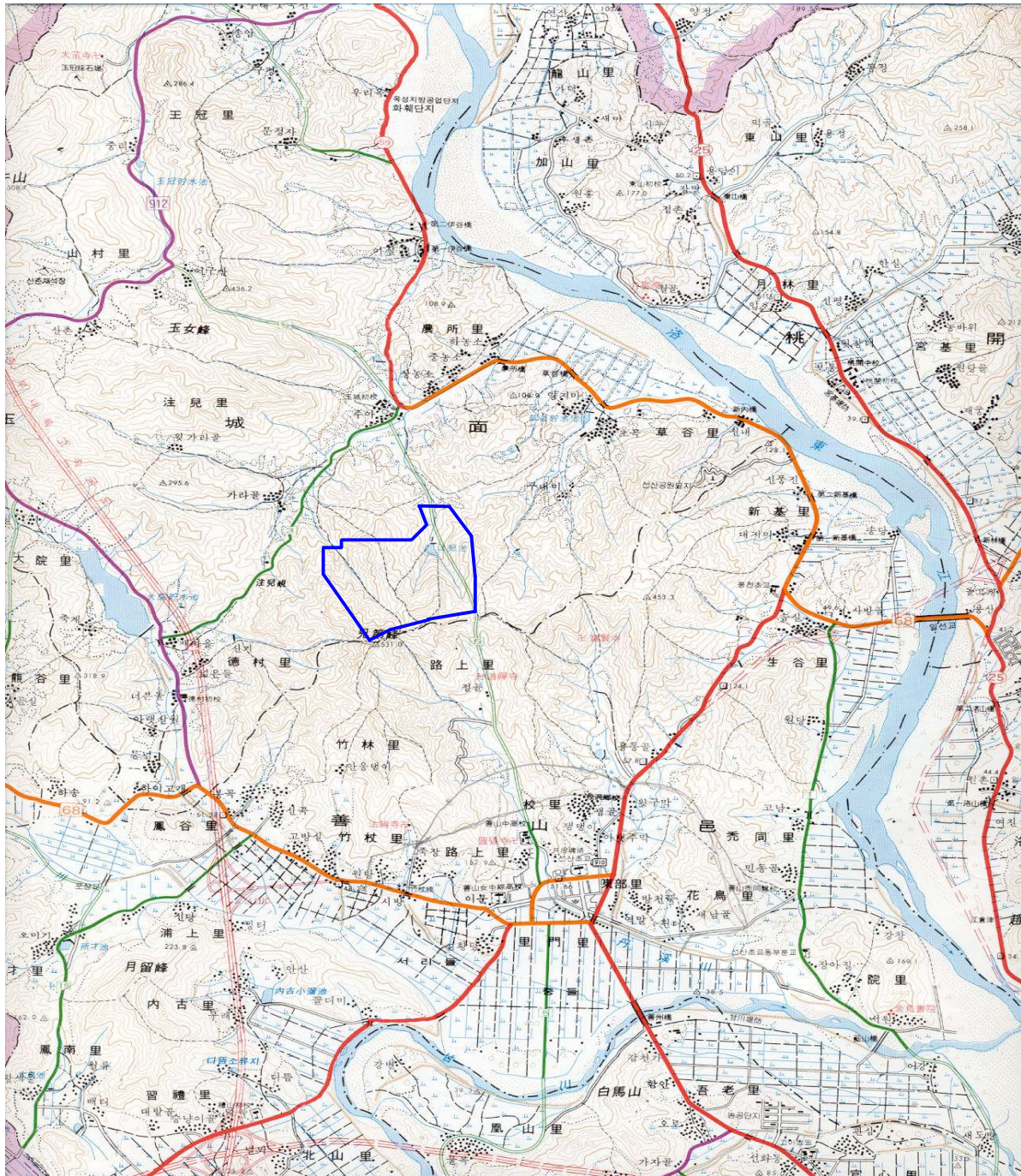
2009년도 옥성자연휴양림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시설물 조서		비 고
① 건축물	관리사무실 / 숲속의집 10동, / 화장실 (5)/ 지역특산물판매장 / 펌프실 /취사장 (3) / 음수전 샤워장/ 세탁실		연면적 : 811.44㎡
② 기계설비	보일러 / 배수펌프 / 에어컨 / 온수기		
③ 자생식물단지	약초원, 열매원, 화목원, 수변원, 정화원, 경관원		총 4,075 m
④ 휴양시설물	야영데크장(65) / 등의자((12) / 평의자(10) / 데크로드(190m)/ 야외무대 / 전망데크 /식재터널 목 교(5) / 원두막 (4)		
⑤ 부대시설물	간판(게이트)/ 종합안내판/ 안내판(49) / 이정표(13) / 야외테이블(10)/ 그네의자(2)/ 원주목의자(22)/ 등벤치(3) / 통나무의자(28)		
⑥ 등산로 및 산책로	참살이길, 민속의길, 선현의길, 솔향기등산로, 옛오솔길		
⑦ 운영·관리용품	가전제품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고(12) / TV(12) / 컴퓨터(3) / 전기밥솥(11) / 선풍기(11)/ 청소기 / 무인카메라	
	운영물품	오토바이트레일러(2)/ 경운기트레일러 / 모터싸이클(2) / 경운기 / 침구/ 쇼파 / 주방용품	
	사무용품	컴퓨터(3)/ 프린터/ 책상(5)/ 캐비닛(4) / 서랍장(5)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위치도



범례	
금회시공	적색
기시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 현황 전경도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13조

- 제13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호~4호. : 1.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